



KAB-SR-FMS

KFCC 산림경영인증(PEFC 상호인정) 인증스킴 요구사항

Issue 2

2025. 08. 01. 발행

2025. 08. 01. 시행

KFCC-G-01:2025

이 문서는 PEFC의 Certification and Accreditation Procedures Annex 6에 따라 KFCC가 도입한 한국산림인증제도 운영지침 KFCC-G-01 표준을 기초로 KAB가 발행한 문서로, KFCC-S-01:2025 산림경영시스템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증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인증스킴 요구사항이다.

KAB-SR-FMS

KFCC 산림경영인증(PEFC 상호인정) 인증스킴 요구사항

목차

	쪽
0. 개요	3
1. 총칙	3
2. 인증제도 운영체계	3
3. 운영기관의 조직 및 인증제도 운영	3
4. 인정기관의 조직 및 인증기관 인정	4
5. 인증기관의 인증활동	4
6. 인증심사원의 교육 등	6
7. 인증신청조직	6
8. 인증마크의 사용	6
별표 1 (필수) 인증기관 공시(Notification) 기준	7
별표 2 (필수)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8
별표 3 (필수) 산림경영인증 심사일수	10
별표 4 (참조) 산림인증 심사비용	11

0 개요

- 0.1** 이 문서는 한국인정지원센터(Korea Accreditation Board, 이하 “센터” 또는 “KAB”라 한다.)가 산림경영시스템 인증기관을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KAB로부터 산림경영시스템 인증기관으로 인정을 획득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문서와 KAB에서 정한 인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0.2** 산림경영시스템 인증기관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이 문서와 **KAB-R-MSCB**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리고 PEFC에서 산림경영시스템 인증기관 인증 요구사항의 명확한 적용을 위하여 공표한 지침이 이 기준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이 기준의 변경 공고 전에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 별도의 KAB 공고를 통해 이 기준의 변경 공고 전에 적용할 수 있다.
- 0.3** 이 문서는 관련 국제규정, PEFC 및 국가산림인증운영기관의 산림인증제도 또는 지침의 변경에 따라 수시로 개정될 수 있다. 또한 산림경영시스템 인증기관은 PEFC 및 국가산림인증운영기관에서 이 기준 이외의 별도의 지침을 정할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총칙

KFCC-G-01, 1절 참조.

산림경영시스템 인증기관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이 기준과 **KAB-R-MSCB**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들 기준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2 인증제도 운영체계

KFCC-G-01, 2절 참조

3 운영기관의 조직 및 인증제도 운영

KFCC-G-01, 3절 참조.

4 인정기관의 조직 및 인증기관 인정

4.1 인정기관의 품질시스템

- 4.1.1 인정기관은 국제표준(ISO/IEC 17011: 인정기관 요구사항)에 적합한 품질시스템을 수립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 4.1.2 인정기관은 IAF(국제인증포럼) MLA(국제상호인정협정) 회원이어야 하며, 회원자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4.1.3 인정기관은 다음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a) 인증기관이 인정기준에 적격인지 평가 및 인정

b) 운영기관이 정한 인증기관의 의무 및 인증심사원 자격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인증기관이 충족하고 있음을 보장

4.2 인정신청 접수

- 4.2.1 인정기관은 인정에 필요한 절차 등의 관련규정을 문서화하여 이를 공개해야 한다.
- 4.2.2 인정기관은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이 인정을 신청한 경우 인정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인정평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4.3 인정기준 및 인정평가 등

- 4.3.1 산림인증은 산림인증표준의 개발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공평하고 충분한 역량이 입증된 독립적인 제 3 자 인증기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 4.3.2 인증기관에 대한 인정기준은 PEFC 요구사항에 따라 이 기준, **KAB-R-MSCB** 및 운영기관의 추가 스킴표준으로 한다. 다만, 국내 산림인증제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정기준에 추가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
- 4.3.3 인정기관은 인정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인정평가를 실시하고 신청기관의 역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4.3.4 인정기관은 인정신청을 한 조직에 대해 인정을 결정한 경우, 그 결과를 운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인정된 인증기관에 대해 인정기관이 인정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제재를 한 경우에도 그 결과를 운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 4.3.5 기타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등은 인정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4.4 인정전환

- 4.4.1 PEFC 상호인정 운영기관에 의해 승인된 인증기관이 KAB 에 인정전환 신청을 하는 경우, 타 인정기관에서 발급한 유효한 인정서를 근거로 인증기관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전환 신청을 위해 운영기관의 전환 신청에 대한 승인을 사전에 득해야 한다.
- 4.4.2 인정 전환의 세부사항은 **KAB-AM-CAB 5.6** 을 준용한다.

5 인증기관의 인증활동

5.1 인증기관의 품질시스템 등

- 5.1.1 인증 심사는 인증 표준 개발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인정기관에 의해 충분한 역량이 입증되며, 인증조직과의 독립성이 보장된 제 3자 인정기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 5.1.2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표 2**의 인증심사원 자격기준을 만족하는 자를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산립경영에 대한 적절한 지식과 기술에 대해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 5.1.3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인정기관의 인정 기준에 적합한 품질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5.1.4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인증기관은 운영기관이 정한 공시(Notification) 조건을 만족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운영기관으로부터 공시되어야 한다.
- 5.1.5 인증기관은 산립경영에 대한 기술적 역량,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영향에 대한 역량, 산립인증 기준에 대한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5.2 인증심사 등

- 5.2.1 인증기관은 인증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인증절차 등을 인증 신청조직에 제공하여야 하며,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 제출 서류가 구비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 5.2.2 인증기관은 인정기준 및 인증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인증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 5.2.3 인증기관의 인증 심사기준은 산립경영인증표준(KFCC-S-01), 단체산립경영인증가이드(KFCC-A-01), KFCC/PEFC 인증마크 사용표준(KFCC-S-04)으로 하며, 심사절차는 ISO 19011 을 따라야 한다.
 - 5.2.4 인증기관은 인증심사를 완료한 후 인증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신청조직에게 제공하고 인증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심사의 증거로 인증 표준과의 정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진행한 외부 이해관계자(지역공동체 등)와의 의사소통과 관련한 정보는 인증심사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
 - 5.2.5 인증기관은 인증신청조직이 인증 표준 요구사항을 충족할 경우 신청조직에 인증서를 발행해야 하며, 만약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조직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5.2.6 인증기관은 인증서 발행 후 15 일 이내에 인증조직 등에 대한 정보를 운영기관이 정한 서식에 따라 운영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 5.2.7 인증기관은 발급되는 모든 산립경영인증 인증서와 해당 인증서의 유효성 및 범위에 관한 변경 사항을 운영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 5.2.8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5 년으로 하며, 인증조직에 대한 사후관리심사는 연 1 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사후관리심사의 주기는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 만약 인증조직이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인증서의 유효기간 안에 갱신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 비고** 인증기관 요구사항 등 세부 기준을 나타내는 문서가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
- 5.2.9 인증기관은 인증 받은 조직의 인증마크 사용의 적절성에 대해서 확인해야 한다.
 - 5.2.10 인증기관은 인증조직이 인증범위 등을 추가 신청한 경우 추가심사를 실시해야 하며, 기타 세부 절차는 인증기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5.2.11 피심사자의 산립경영 기준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요약이 포함되어 있으며, 인증기관이 작성한 인증 보고서 요약은 피심사자 또는 해당 산립 인증 제도에서 정의한 적용 요건에 따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5.3 인증기관의 준수사항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운영기관 및 인정기관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 a) 인정기준에 적합하게 품질관리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
- b) 신청조직이 인증을 신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않아야 하며,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된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에는 관련 인정기관의 인정마크(심볼)가 포함되어야 한다.
- c) 운영기관 및 인정기관의 인증제도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d) 기타 운영기관 및 인정기관이 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6 인증심사원의 교육 등

KFCC-G-01, 6 절 참조

7 인증신청조직

KFCC-G-01, 7 절 참조

8 인증마크의 사용

8.1 인증로고의 사용

- 8.1.1 인증조직 등이 PEFC 및 KFCC 인증마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기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한다.
- 8.1.2 인증마크를 사용하고자 하는 조직 등은 운영기관에 인증마크 사용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 8.1.3 인증마크의 사용을 승인받은 조직은 인증마크 사용표준(KFCC-S-04) 및 기타 운영기관이 정한 규정에 따라 인증마크를 사용하여야 한다. 만약 인증마크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 운영기관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별표 1**(필수) 인증기관 공시(Notification) 기준**

1. 법인체이거나 법인체의 규정된 일부로서 인증기관의 모든 인증활동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을 것
2. 운영기관이 정한 특정 정보의 공개에 동의할 것
3. IAF MLA 에 등록된 국가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것
4. 운영기관의 “공시 계약서”에 서명할 것

별표 2

(필수)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인증심사원은 산림경영 및 인증프로세스에 대한 지식과 기술적 노하우 등을 확보해야 하며, 최소한 다음 각 호의 모두를 만족하여야 한다.

1. 학력요건 혹은 실무경력 요건

다음의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여야 한다.

- 가. 4년제 대학에서 산림 또는 목재 관련학과 전공자로 산림 관련 실무경력 2년 이상
- 나. 2년제 대학에서 산림 또는 목재 관련학과 전공자로 산림 관련 실무경력 4년 이상
- 다. 고등학교 졸업(비전공자) 후 산림 관련 실무경력 6년 이상

표 2.1 인증심사원의 학력 및 실무경력 요건

학력요건	실무경력 요건
4년제 대학에서 산림 관련학과 전공자	산림관련 실무경력 2년 이상
2년제 대학에서 산림 관련학과 전공자	산림관련 실무경력 4년 이상
비전공자	산림관련 실무경력 6년 이상

※ 실무경력은 다음을 만족하여야 한다.

- 가. 산림 관련 산업분야(공공기관업무 포함)에서 산림관리 업무를 직접 담당 및 수행
- 나. 산림 관련 연구업무의 수행
- 다. 산림관리 등에 대한 인증심사 혹은 컨설팅 업무 수행

* 산림 분야와 관련하여 연간 72 일 이상의 자문서비스 수행 경력 및 연간 30 일 이상의 인증심사 수행 경력(4 시간 이상 8 시간 미만은 0.5일로 산정)은 1년의 실무 경력으로 인정 가능

2. 인증심사원 교육과정 이수 및 시험평가

다음의 인증심사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험평가에 합격하여야 한다

표 2.2 인증심사원 교육과정

과정명	인증심사원 교육
산림경영인증 심사원 교육	- 운영기관이 실시하는 인증심사원 교육과정 이수 혹은 - 운영기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의 인증심사원 교육을 이수
지식평가	- 인증심사원 교육을 수료하고 운영기관이 실시하는 지식평가에 합격

3. 인증심사경력 요건

1 호~2 호의 모든 요건을 만족한 경우 인증심사원(보)로서 최소 2 회 이상의 인증심사 경험이 있어야 한다.

4. 인증심사원 자격유지 요건

인증심사원은 2 년에 1 회 이상 운영기관에서 진행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별표 3

(필수) 산림경영인증 심사일수

표 3.1 산림경영시스템 인증면적과 심사일수 간의 관계(최초심사에 한함)

인증면적(ha)	1 단계 심사시간(일수)	2 단계 심사시간(일수)
500 이하	0.5	1
501 ~ 1,000	1	1
1,001 ~ 5,000	1	1.5
5,001 ~ 10,000	1	2
10,001 ~ 25,000	2	3
25,001 ~ 50,000	2	4
50,001 ~ 100,000	2	5
100,000 초과	3	5

※ 1·2 단계 심사의 정의 및 상세 내용은 ISO/IEC 17021-1(적합성평가 - 경영시스템 심사 및 인증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을 따름

비고 1 심사일수는 심사 수행 시간만을 규정한다.

비고 2 심사일수는 30% 내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기록으로 유지하여 이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 정당한 사유(불가항력 사유 또는 심사 대상 현장의 분산성 등)

비고 3 사후관리 심사일수는 최초심사의 70%를 적용한다.

비고 4 갱신심사는 최초심사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1 단계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비고 5 인증비용은 심사비용(심사일수 × 심사요율) + 부대비용(행정비용, 출장비용 등)으로 산출되며, 심사요율 및 부대비용은 인증기관 내규에 따른다.

별표 4**산림인증 심사비용**

KFCC-G-01, 별표 4 참조



한국인정지원센터
Korea Accreditation Board

KAB-SR-FMS

KFCC 산림경영인증(PEFC 상호인정) 인증스킴 요구사항

Issue 2